

2000. 3. 31 制定

2019. 7. 31 改正

감사위원회 규정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전자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구성)

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 (해임)

위원에 대한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는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원한다.

제3장 회의

제5조 (위원회)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결의방법 등)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 대면 회의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권한 및 책임

제8조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업무감사권

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영업보고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이사보고의 수령권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모회사의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을 시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각종의 소권

위원회는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사 무효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담보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⑦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⑨ 외부감사인 선정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 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승인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통지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제9조 (의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록의 작성의무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

위원회는 주주총회 6주전에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관계법령상의 서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간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 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 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는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⑥ 외감법상의 의무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기타 법령, 정관 및 의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5장 기타사항

제10조 (의사록)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3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